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99. 9.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 제안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공중위생법등의 개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의 신설, 폐지의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동 조례 제3조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 징수대상 민원사무를 신설 및 폐지.
 - 현재 제증명등수수료징수대상 사무 113종 중
 - 신설하여야 할 종목 → 행정정보공개수수료외 63종
 - 폐지하여야 할 종목 → 호텔업영업신고외 34종으로 총142종으로 개정

구 분	종 목 수	신설 및 폐지	비 고
행정정보공개수수료	6종	폐지	상위법 개정
	61종	신설	“
공중위생법 관련	24종	폐지	“
매장 및 묘지법 관련	1종	폐지	상위법 일탈
의료법 관련	3종	신설	상위법 개정
공연법 관련	4종	폐지	“

- ◎ 제4조제4항의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는 우리시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삭제

- ◎ 제7조제1항, 3항, 4항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조문정비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 구호대상자”를 “생활보호법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동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통·반장 및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공무수행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일제신고등은제외함
(1)인감증명	1통	600원	
(2)인감의 개인신고	1건	500원	
2. 신상에 관한 증명			
(1)부양가족사실확인원	1건	1,000원	
(2)국제결혼증명	1건	3,0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각종신고 및등록필	1통	1,000원	
(2)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1,000원	
(3)공장등록 증명	1통	1,000원	
(4)시설 보유 증명	1통	2,600원	
(5)(식품환경) 영업허가, 휴 · 폐업 사실증명	1통	1,700원	
(6)의료기관, 양국(휴 · 폐업) 사실증명	1통	1,4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미분배 농지	1통	1,000원	지적관계제외
(2)공부의 등 · 초본 교부 대장문서			
· 토지도면	1통	500원	
· 건물도면	1통	500원	
(3)공부열람			
· 기본료	시간당	400원	
· 초과료	10분당	100원	
(4)인 · 허가 · 들고 ·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400원	
(5)공시지가확인서(토지, 임야대장등본에 기재하여 발급할 경우도 같음)	1개년도 1필지당	8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 고
5.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1,000원	
(2)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1,000원	
(3)환지 예정지에 대한 중전 토지 분할	1필지	1,000원	
(4)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2,500원	
(5)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1,000원	
(6)토지대금 완납 증명	1건	1,0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 납세증명	1통	700원	
(2)납세 완납 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	1통	700원	
(3)세목별 과세증명	1통	700원	
(4)징수유예 증명	1통	2,500원	
7. 회계에 관한 증명			
(1)거래액(물푸공급실적) 증명	1통	1,300원	
(2)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1,300원	
(3)원천징수 공제 증명	1통	1,300원	
(4)공사중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1,3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1)공(시)영주책 분양금 납부 증명	1통	500원	
9. 개인정보화일열람			
(1)화일열람	1건	200원	
(2)정정청구	1건	200원	
10.기타 제증명			
(1)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1,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후
제4조(기준) ①~③(생략)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 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생략)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구호대상자 2. (생략)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통,리 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리(통)반장의 공부 열람표	제4조(기준)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생략) 1. 생활보호법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2. (현행과 같음) 3. 통.반장 및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공무수행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삭 제)